##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756 발의연월일: 2024. 6. 20.

발 의 자:김용민·이성윤·서영교

모경종 • 강유정 • 민형배

김용만 · 임미애 · 장경태

한준호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안은 국회에서의 안건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관련하여 하는 보고와 서류제출의 요구, 증언·감정 등에 관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음.

국회의 출석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는 경우 동행명령 등을 할 수 있도록 되어있으나, 안건심의의 경우 동행명령 등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 안건심의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안건심의 시에도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할 경우 동행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해 안건심의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6조제1항).

법률 제 호

##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국정감사나"를 "국회에서 안건심의 또는 국정감사나"로 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증인에 대한 동행명령) ①	제6조(증인에 대한 동행명령) ①		
<u>국정감사나</u> 국정조사를 위한	국회에서 안건심의 또는 국정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감사나		
는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의결로 해당 증인에 대하여 지			
정한 장소까지 동행할 것을 명			
령할 수 있다.			
② ~ ⑦ (생 략)	② ~ ⑦ (현행과 같음)		